

01 사회안전

· 슬 / 로 / 건

안심사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요!



과제 1-1 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1) 과제 개요

- 우리 마을을 동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경찰과 연계하여 어두운 우범 지점을 찾아 보다 밝게 하고,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범죄 등 위험요소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받는 안전마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감

2) 최근 발생한 범죄 사례

- 사례**
- 수원 오원춘사건
 - 2012년 4월 1일 발생. 일명 수원 토막 살인사건
 - 퇴근하는 여성 회사를 집으로 납치하여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사건
 - 부산 김길태사건
 - 2010년 2월 24일 발생
 - 집안에 있던 여자 중학생을 납치, 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
 - 강호순 사건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저지른 여성 7명을 연쇄 납치 살인 사건
 - 안양 혜진·예슬이 사건
 - 2007년 12월 25일 발생
 - 하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 2명을 납치하여 성폭력하고 살해한 사건

3) 선진국의 범죄예방 사례

① 영국의 안전도시 운동 전개

영국 중앙정부에서는 2005년 내무성을 중심으로 범정부협력체(Gross-Government Respect Agenda)를 구성하여 전국지역안전계획(National Safety Plan)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범죄율이 높은 도시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8년 영국 내무성의

범죄예방부서 주도하여 지역주민·자치단체·경찰·민간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프로그램인 ‘안전도시 운동 (Safer City Program)’을 실시

② 미국의 셉테드(CPTED)¹조례 제정

미국에서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조례 또는 행정명령을 통해 의무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민간분야에서 치안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참고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미국 전역에 활성화 된 ‘스포트라이트 프로젝트(Spotlight Project)’는 지역공동체의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집중 보호관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통제를 개선시킨 사례임

③ 프랑스의 지역치안협약(Contrat local de sécurité, 1997)

프랑스에서는 증가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치안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이 각각 담당해야 할 분야를 설정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지역안전협약(Contrat local de sécurité)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음

④ 독일의 범죄 예방 위원회 운동

독일 쉴레스비히 - 홀스타인 주에서는 1990년부터 주정부 내각의 의결을 통해 범죄감소와 이를 통한 시민들의 객관적인 안전상태, 주관적인 안전체감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범죄예방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이 역시 경찰, 법무부 등과 같은 국가기관과 민간조직과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범죄요인 감소 및 범죄예방을 추구

⑤ 일본의 안전마을 추진 협의회 운영

일본 가나자와현에서는 2002년 ‘범죄없는 안전·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경찰, 사업자, 주민대표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오사카부 안전마을 추진회의’를 설립하고 각 경찰서 단위별로 ‘안전마을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4) 한국의 셉테드(CPTED) 운영사례

①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 서울의 달동네로 알려지며 안전에 취약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으나 ‘소금길’산책코스를 만들며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범죄예방효과를 거둠
- ‘소금길’산책코스의 페인팅으로 그림과 무늬를 입혀 밝은 분위기를 조성
- 알람벨을 통해 위급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냄
- 산책코스에 포토존과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유동인구증가 유도
- 셉테드(CPTED) 적용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9.1%하락, 가족 범죄에 대한 두려움 13.6%하락, 동네에 대한 애착 13.8%증가, 만족도 83.3%, 범죄예방효과 73.6%라는 성과 달성



② 서울시 강서구 공진중학교

- 교내 벽에 그림을 통한 밝은 분위기 조성 및 사각지대를 스포츠·놀이 공간 등의 참여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 폭력 예방효과를 거둠(외벽과 내벽의 페인트칠, 사각지대 CCTV설치 및 공간활용)
- 본관의 어두운 공간에 샌드백을 설치하여 쉬는시간이나 방과 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으로 활용
- 학교 내 셉테드(CPTED) 적용 결과 무질서 인식율 7.4%, 범죄 두려움 3.7% 하락한 반면 학교 시설물에 대한 호감도는 27.8% 상승함

1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환경설계



5) 안심마을 만들기 지역주민 실천수칙

- 첫째, 최소한 월 1~2회 이상씩 범죄 없는 안전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순찰 서비스 수행
- 둘째, 맞벌이 부부의 어린 자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최소한 주 1회씩 돌봄 서비스 수행
- 셋째, 늦은 시간 귀가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 여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 주 1회씩 동행 서비스 제공
- 넷째, 나 자신부터 범죄 안전의 심각성과 범죄사고 예방수칙을 충분히 숙지한 후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서비스 제공
- 다섯째, 상기 내용을 실천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범죄 없는 안전 마을 만들기」 위한 지역 치안 네트워크 구축

Tip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가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 (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 (George L. Kelling)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Broken Window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임



과제 1-2 클린 인터넷(폭력·음란물 NO)

1) 과제 개요

- 어린이·중·고등학생 때부터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법과 피해 등을 충분히 알려 인터넷상 폭력·음란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클린인터넷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부모님에게도 교육을 통해 위험성과 구체적 예방법을 알려주는 등 가정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

2) 스마트폰의 위험성

초·중·고 스마트폰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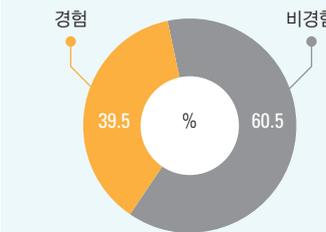
2013. 6. 28 ~ 7. 8
전국 초중고 11,410개교 학생 6,282,775명 대상



스마트폰이 학용품?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요즘, 국내 초·중·고교생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도 절반 가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

성인물 이용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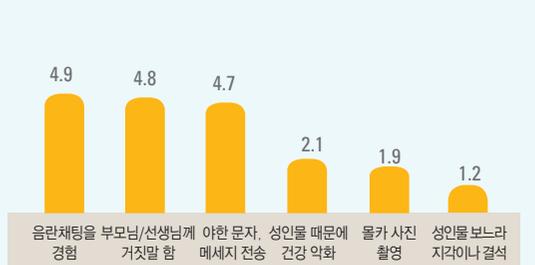
전세계의 음란물 등 성인정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속 가능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음란물과 성인정보가 폭증,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

청소년·어린이가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잘못된 성의식이 형성될 수 있으며 성범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최근 6개월간 성인물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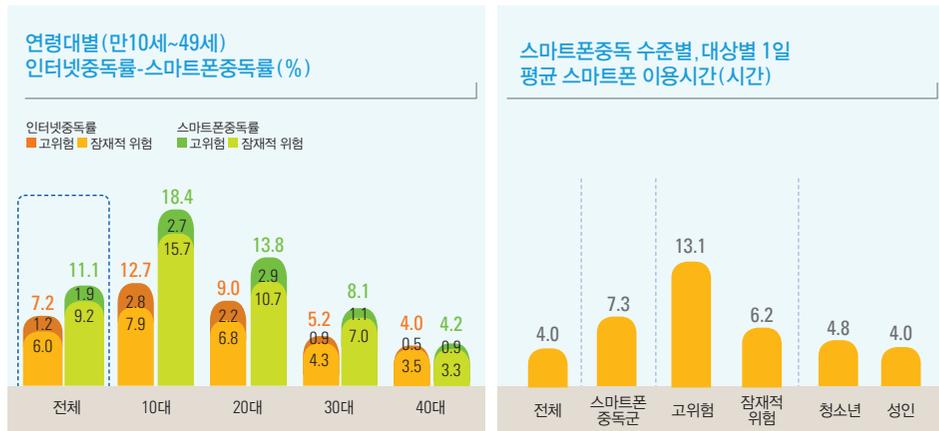
성인물을 접하고 난 후 경험 행위(그렇다 비율)(%)



• 성장기 자녀의 잦은 스마트폰 이용 - 스마트폰 중독 위험

스마트폰은 개인PC보다 접근성이 높아 자제능력이 떨어지는 10대는 청·장년층 보다 쉽게 중독증세에 빠지기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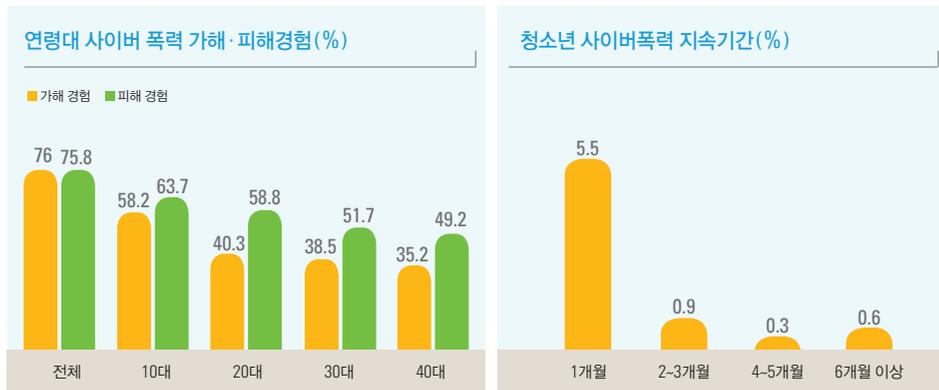
청소년, 어린이가 스마트폰 자극에 자주 노출되면 뇌가 균형있게 발달하지 못해 주의력 부족과 산만함,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빠르고 강한 정보에는 익숙하고 현실세계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하는 팝콘브레인(popcorn Brain) 발생 위험 있음



• 학교폭력도 사이버나 휴대전화 문자폭력 등으로 진화

과거에는 금품을 빼앗거나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쉽게 드러나는 학교폭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조직화되는 추세로 변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단체로 보내 괴롭히거나 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며,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욕설·협박하는 언어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



3) 음란물 중독 예방 방법

알고 계세요?

Q ‘음란물’과 ‘성인물’은 같다?

A ‘음란물’과 ‘성인물’은 다름
 ‘성인물’은 성인(19세 이상)이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이나 ‘음란물’은 포르노 등으로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도 봐서는 안되는 불법정보임

Q ‘음란물’도 중독된다?

A 호기심과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아이들은 계속 음란물을 찾게 되며 반복적으로 탐닉하게 되어 중독될 수 있음
 음란물의 본질인 선정성과 폭력성이 아이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되며 자기 통제가 힘들어져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

Q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면 처벌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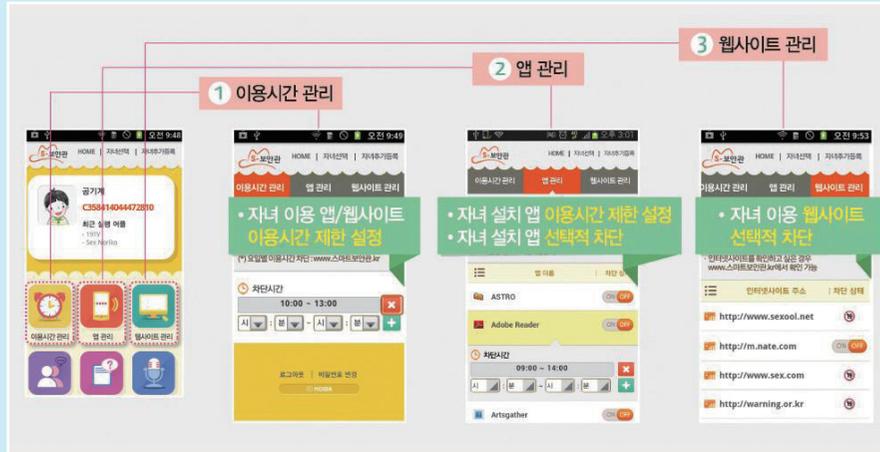
A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적용
 - 음란물 유포 : 음란물을 배포 · 판매 ·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아동 음란물 소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본인이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유포 :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셀카 음란물(자신의 특정부위, 자위행위) 등을 직접 촬영한 영상물 문자, SNS 채팅창 등을 통해 유포 또는 거래시 형사처벌

Q 음란물 중독으로 의심된다면?

A 컴퓨터는 거실 등 가족 공용공간에 두고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
 운동이나 문화생활 등 다른 취미를 가지도록 노력
 음란물 중독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 필요

Tip

「스마트 보안관」² 이용한 부모의 스마트폰 관리방법



● 이용시간 관리

자녀가 설치한 앱과 인터넷사이트의 이용 제한시간 설정

● 앱관리

자녀가 설치한 앱 목록 조회 및 부모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차단 또는 해지 가능하며, 앱별로 선택하여 이용시간 제한 설정

● 웹사이트 관리

자녀가 접속한 웹 (인터넷) 사이트 목록 조회 및 부모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차단 또는 해지



2 안드로이드폰은 Play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검색 및 설치 가능

4) 사이버 폭력 예방 방법

알고 계세요?

Q 사이버폭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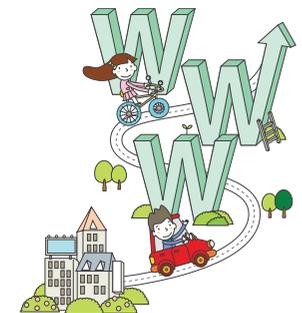
A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부호나 문자, 음향,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Q 사이버폭력의 실태는 어느 정도?

A 10대 청소년의 76%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었고, 75.8%는 피해를 경험하는 등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에 더 쉽게 노출
또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은 1개월 (5.5%)부터 6개월 이상(0.6%)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폭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Q 사이버폭력이 왜 문제인가?

A 사이버상의 폭력은 “신체적인 피해나 금전적인 갈취와 같은 외형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마트폰 채팅방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늘어나 청소년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
심한 경우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발생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를 지키려면?

- 자녀에게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도록 교육
- 평소에 대화를 통해 자녀들에게 바른 언어습관을 길러 줌
- 자녀와 사이버폭력(사이버따돌림)이나 다른 온라인 이슈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
-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부모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혹은 알지 못하도록)관리
- 컴퓨터는 거실에 두어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고 사용시간을 정함
-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핌
-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음란폭력물 차단 프로그램과 언어폭력 경고메시지 수신 서비스(모바일 가디언 : <http://www.mguardian.co.kr>)를 설치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
- 사이버 폭력 신고 절차와 피해 조력 기관을 알아 둠
-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알게 된 경우 자녀에게 직접 해결하려 들지 말고 주변 어른들과 상의할 것을 강조

5) 예방 및 상담기관

예방 및 상담 기관	홈페이지	전화번호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미래부, 전국 12개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용인, 경기 의정부, 충북, 충남, 강원, 전북, 제주	www.iapc.or.kr	대표 전화 1599 - 0075
아이윌 센터 (서울시 4개소)	명지	www.mjiwill.or.kr 02 - 300 - 3962~9
	보라매	www.brmiwill.or.kr 02 - 836 - 1385~8
	창동	www.cdiwill.or.kr 02 - 950 - 9670~8
	광진	www.gjiwill.or.kr 02 - 2204 - 3180~9
위센터 (학생 위기상담 종합 지원 서비스)	www.wee.or.kr	대표 전화 1588 - 7199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 전화(여가부)	www.cyber1388.kr 1388.kyci.or.kr	국번 없이 1388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cyber112.police.go.kr	국번없이 117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www.mogef.go.kr	국번없이 1366
한국자살예방협회	www.suicideprevention.or.kr	1577-0199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www.jikim.net/sos	1588-9128

Tip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법

- ✓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지만 지키지 못한다.
- ✓ 인터넷을 하느라 밤늦게 잠을 자고 식사를 거른다.
- ✓ 현실의 친구보다 인터넷 상의 친구를 더 좋아한다.
- ✓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부터 켜다.
- ✓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 ✓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인터넷 상의 게임 등을 생각한다.
- ✓ 스트레스를 인터넷을 하면서 푼다.
- ✓ 인터넷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면 반항하며 안절부절 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위 항목 중 3개 이상이면 인터넷 중독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함

Tip

인터넷 중독 예방법

- 컴퓨터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장소에 설치한다.
- 강압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다른 활동을 유도하여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간다.
- 음란물 차단 시스템 등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을 나무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이들에게 인터넷 말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과제 1-3 불량식품 안 사먹고, 안 만들기

1) 과제 개요

- 국민들의 불량식품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동안 식품사범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매우 낮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벌금 등 행정처분이 미약하여 처벌보다 불량식품 판매의 부당이득이 훨씬 큰 구조이므로
- 전방위적으로 불량식품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불량식품을 만들지도 사지도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됨

2) 불량식품 정의, 유형 및 식별방법

- 정의 : 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
 - (협의) 부패·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
 - (광의) 허위·과대광고, 가짜식품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
- 유형 : 사회적인 통념상 위생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식품을 고의적으로 생산·제조·유통·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

대표적인 불량식품 판매유형

- ①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 행위
 - ▶ 유해·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사료용 원료 등을 식품에 넣어 판매
- ②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 행위
 - ▶ 가짜참기름, 신선도가 떨어지는 원료에 색소를 사용하여 판매
- ③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
 - ▶ 국내 무신고 제품 판매, 온라인 구매 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 ④ 저가·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 행위
 - ▶ 담배, 화투 모양 과자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나 미끼 상품 판매
- ⑤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
 - ▶ 세균수 초과 냉면,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 판매, 사용반찬 재활용 등

미국 FDA 사례

유해물질 함유 등 14가지 유형의 위반 사례를 불량식품으로 간주

- ▶ 유독·유해물질 사용, 부패·변질, 특정성분(영양소 등)이 빠져있는 식품,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료 사용, 중량 등 변조, 허위표시, 다른 회사 제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판매하는 식품 등

• 식별방법

유형	식별방법
무허가 제품	- 상품에 아무런 표시가 없음(제조업소명, 소재지 등) - 등록 또는 특허 출원중이라는 등 애매한 표시 - 허가관청 이외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 - 가격이 동종의 타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가임
허가제품의 변조 및 위조품	- 겉모양은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 냄새, 색깔 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 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포장지의 원 제조일자 위에 스티커 등으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다시 부착
유해물질 사용제품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옴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기타	- 제조업소명, 소재지, 허가번호 및 유통기한이 표시 되지 않았거나 허위 표시된 제품 - 부패, 변질, 변색된 제품 - 불결하거나 광물성질의 이물질이 유입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 사용 제품 - 원료명 미표시 제품 - 식품허가기관 이외의 관청명, 단체명, 외국명 등을 강조하는 내용과 특정 질병의 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 표시 - 유통기한 경과제품

3) 불량식품 피해 사례

사례

특정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불량 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Y씨(58)를 불구속 입건
 또 이를 복용한 소비자에게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L씨(50·여)도 불구속 입건
 - Y씨는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전라남도 모처에서 생산한 불량식품을 고혈압 등의 치료제로 속여 양평군에 소재한 A연구소 등에 50여 박스(시가 1천500만원 상당)를 팔아온 혐의
 - L씨는 A연구소 등을 통해 불량 식품을 구입한 피해자 K씨(58)에게 부정맥 등의 증세로 인근 병원에서 1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불량 식품은 복용시 오심, 구토, 저혈압, 심실 부정맥 등 부작용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4)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실천수칙

- 첫째, 불량식품의 종류, 위험성, 근절방안 등에 대한 지식 습득
- 둘째, 가정에서 자녀 등 가족에게 불량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실시
- 셋째,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는 「불량 식품 시민 감시단」 활동에 적극 동참
- 넷째,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추방운동에 적극 앞장섬
- 다섯째,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불량식품 안 사먹고, 안 만들기 운동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동참 유도

불량식품 신고방법

- 전 화 ☎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두 국번없이 1399
 인 터 넷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
 (<http://www.mfds.go.kr/cfscr>)
 모바일 앱 📱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하여 신고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실행)

5) 불량식품 제조시 처벌 규정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게 영업하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영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또한 불량 식품 등을 압류, 폐기처분을 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에 위해발생시 영업자는 반드시 위해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함
- 영업주가 상기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자체를 폐쇄 시킬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 등 식품위생에 위해 발생시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자체장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내용 별로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음

